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7. 9 선고 2024가단5029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6. 4.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명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을 상대로 보증채무금등 청구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단1440)을 제기하여 2016. 7. 6. '망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 C은 2016. 11.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가 있으며,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느단148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3. 31.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24. 1. 11. 위와 같이 확정된 종전 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종전 판결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C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고,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결국 종전 판결의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을 넘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해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은진